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난안전관리본부 운영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재난안전관리본부), 02-970-9116

제정 2015. 6. 5.

개정 2016. 9.1.

개정 2017. 3.8.

일부개정 2021. 7. 19.

일부개정 2023. 6. 2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」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재난안전관리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3. 6. 23.)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재난"이란 교직원(교원, 직원, 조교) 및 학생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자연재난 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대설, 낙뢰, 가뭄, 지진, 황사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 - 나. 사회재난 : 화재, 붕괴, 폭발, 화생방사고,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- 2. "재난관리" 란 재난의 예방, 대비,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

활동을 말한다.

- 3. "안전관리" 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- 4. "예방"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 사업,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
- 5. "대비" 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·훈련, 매뉴얼 정비, 비상대처 계획수립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
- 6. "대응"이란 재난 발생 시 현장지휘, 응급조치, 긴급구조, 상황관리, 기관간의 협조·지원, 응급복구(피해발생 즉시 임시로 복구하는 것)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
- 7. "복구" 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·시행,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, 개선대책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
- 8. "안전문화활동"이란 안전교육, 안전훈련,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
- 9. "산업안전"이란 현업직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,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말한다. (신설 2023. 6. 23.)
- 10. "중대재해" 란 「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. (신설 2023. 6. 23.)
- 제3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 이 규정은 재난안전관리에 관하여 본교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- 제4조(본부의 설치) ①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

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본교에 재난안전관리본부(이하 "본부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본부에 재난안전관리센터·실험실습안전센터·학생안전센터를 둔다. (개정 2023. 6. 23.)
- ③ 본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. 제5조(기능) 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- 1. 재난관리, 연구실안전, 소방안전, 중대재해, 산업안전 등에 관한 지도· 관리업무 (개정 2023. 6. 23.)
 - 2. 재난안전관리 계획 수립, 안전점검, 안전문화활동 등의 예방활동
 - 3. 재난대응 교육·훈련, 매뉴얼 정비 등 대비활동
 - 4. 재난발생 시 상황관리, 대피명령, 통행제한, 응급복구 등 대응활동
 - 5. 재난의 피해상황 조사, 복구계획 수립 등의 복구활동
- 제6조(조직) ① 본부장은 총장이 임명하고, 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. (개정 2023. 6. 23.)
 - ② 재난안전관리센터장은 사무국장이 되며,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. (개정 2023. 6. 23.)
 - 1. 재난관리, 소방안전, 산업안전, 중대재해 등에 관한 업무 수행 (개정 2023. 6. 23.)
 - 2. 재난 예방활동
 - 가. 재난안전관리 추진 계획 수립·시행
 - 나. 소방계획 수립·시행
 - 다. 소방 안전점검 실시
 - 라. 시설물(건축물, 전기시설, 기계시설, 가스시설 등) 안전점검 실시

- 마. 호관별, 호실별 방화관리자 지정
- 바. 안전문화활동
- 3. 재난 대비활동
 - 가. 재난대응 교육·훈련
 - 나.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
- 4. 재난 대응활동
- 5. 재난 복구활동
- ③ 학생안전센터장은 학생처장이 되며,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.
- 1. 재난 예방활동
 - 가. 학생 안전 관련 규정 정비
 - 나. 학생 안전 계획 수립·시행
 - 다. 학생회실 안전 점검 실시
 - 라. 동아리실 안전 점검 실시
 - 마. 교내외 학생 행사 관련 안전 지도
 - 바. 학생 행사별 안전관리자 지정
- 2. 재난 대비활동
 - 가. 학생 안전 교육·훈련
- 나. 학생 안전 매뉴얼 정비·보급
- 3. 재난 대응활동 지원
- 4. 재난 복구활동 지원
 - ④ 실험실습안전센터장은 공동실험실습관장이 되며,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 부장을 보좌한다.

- 1. 재난 예방활동
 - 가. 실험실습실(연구실) 안전관리 계획 수립·시행
 - 나. 실험실습실(연구실) 안전 점검 실시
 - 다. 방사능 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
 - 라. 방사능 물질 안전점검 실시
 - 마. 실험실습실(연구실) 안전환경 조성
 - 바. 실험실습실(연구실) 안전관리자 지정
- 2. 재난 대비활동
 - 가.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
 - 나. 실험실습실(연구실) 재난대응 훈련 실시
 - 다. 실험실습실(연구실)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·보급
- 3. 재난 대응활동 지원
- 4. 재난 복구활동 지원
- ⑤ 본부에 재난관리, 중대재해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및 직원을 둔다. (개정 2023. 6. 23.)
- 제7조(직무대행)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 4조제2항의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8조(안전보건위원회) ① 교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 기 위하여 안전보건위원회를 둔다. (신설 2023. 6. 23.)
 - ② 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되며, 위원은 재난안전관리센터장, 학생안전관리센터장, 각 단과대학장, 일반대학원장이 된다.
 -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, 회의를 총괄한다.

- ④ 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- 1.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
- 2. 안전보건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
- 3.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 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안전보건관련 법령 확보에 관한 사항
-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- 제9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) ① 교내 현업직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둔다. (신설 2023. 6. 23.)
 -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, 사용자위원은 재난안전관리 본부장, 재난안전관리센터장, 총무과장, 재무과장, 시설과장이 되고, 근로자 위원은 각 노조 위원장과 안전·보건관리자가 되며, 총 10명 이내로 위원 을 구성한다.
 -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- 1. 교내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안전보건관리지침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- 3.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 - 4.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·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
 -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
- 제10조(재난안전관리위원회) ①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· 의결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. (개정 2023, 6, 23.)
 - ②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센터장이 되며, 위원은 연구처장, 학생안전센터장, 실험실습안전센터장, 각대학원장, 각 단과대학장, 안전공학과장이 된다. (개정 2021.7.19.)
 - ③ 재난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 - ④ 재난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(개정 2023. 6. 23.)
 - 1. 재난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
 - 3. 재난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그 수습활동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재난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 - ⑤ 재난안전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⑥ 재난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·의결로 의결할 수 있다.(개정 2023. 6. 23.)
 - ⑦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본부 팀장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23. 6. 23.)
- 제11조(재난안전관리실무위원회) ①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부에 재난안전관리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두다.(개정 2017, 3, 8,)

-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센터장이되고, 위원은 총무과장, 학생지원과장, 시설과장, 1, 2행정실장이 된다. (개정 2023. 6. 23.)
- ③ 실무위원회는 교내 「안전관리계획」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년도 계획수립 시 반영하도록 한다. (개정 2023. 6. 23.)
- ④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12조(분야별 재난안전관리) ①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「소방계획」으로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7. 3. 8.)
- ② 학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활동 지도 규정」으로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7. 3. 8.)
- ③ 실험실습실(연구실)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」으로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7. 3. 8.)
- ④ 제6조제4항1호 다목과 라목의 방사능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」으로 따로 정한다.

(개정 2017. 3. 8.)

- ⑤ 감염병 예방·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진료소에서 수립한 「감염병 예방관리 대책」을 따른다. (신설 2021. 7. 19.)
- ⑥ 교내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보건관리지침」으로 따로 정한다. (신설 2023. 6. 23.)
- 제13조(재난안전관리 업무 보좌 등) ① 총무과장은 재난안전관리센터의 소방 업무를 보좌하며, 재난안전관리센터장의 명을 받아 각 센터의 재난관리·안전관리 업무를 총괄·조정한다.
 - ② 시설과장은 재난안전관리센터의 교내 시설물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보좌한다.

- ③ 학생지원과장은 학생안전센터의 학생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보좌한다.
- ④ 공동실험실습관 소속 과장 또는 팀장은 실험실습안전센터의 실험실습 실(연구실)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보좌한다. (개정 2023. 6. 23.)
- ⑤ 본부장은 재난의 예방, 대비,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그 밖의 다른 부서의 장에게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라 업무 지원을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신속히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재난상황의 보고) ① 교직원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재난상황을 별표의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본부 또는 당직실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본부장은 재난상황을 보고 받은 때에는 관계 부서의 장 및 본교 교직원(교원, 직원, 조교)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부칙(제282호, 2015. 6. 5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342호, 2016. 9. 1.)

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371호, 2017. 3. 8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624호, 2021. 7. 19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751호, 2023. 6. 23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재난상황 보고 요령

구분		보고체계
대 응 절 차	상황발생 /최초발견	 ○ 최초발견자 상황발생 인지 ○ 최초발견자 구두・소방싸이렌 등으로 상황 전파 ○ 경미한 상황의 경우 초기 진압 시도
	대피	○ 초기진압 실패시 최초발견자 안전한 장소로 이동 ○ 교직원 및 재학생 신속 대피
	119 신고 상황실 신고	 ○ 대피 후 119 신고 및 당직실에 상황 전파 ○ 초기진압 실패시 재난안전관리본부(야간 및 주말의 경우 당직실)에 신고 ※(야간, 주말) 당직실 ☎02-970-6118 ※(주간) 재난안전관리본부 ☎02-970-9208 ※ 상황실 보고 절차 예시(6하 원칙에 따라 신속 보고) 1) 성 명: (교직원/대학(원)생) 2) 발견일시: (00월 00일 00:00) 3) 장 소: 교내 OOO관 OOO호 4) 간략내용: OOO호관에 OO발생 5) 현재상황: 119신고, 교직원 및 학생대피 등 6) 향후계획: OOO호관 정문에서 소방관에게 상황 전달 및 학교 직원 도착 시 상황 전달 예 정 등
	(학과 <i>/</i> 부서) 장 보고	○ 상황실 (학과/부서)장에 보고 및 총장 보고
	비상소집	○ 필요시 총무과에서 비상소집 발령
	대응조치	 사고지역 접근 통제 화재 등 초기진압 가능시 초기진압 교직원 및 재학생 신속 대피 유도 사고자 응급조치 등